



<기준일: '22.03.16. 현재>

종류	진단 내용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다.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라. 굴착, 채석, 하역, 발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출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성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자.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차.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5. 보호구, 안전·보호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 내지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및 제8호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제4호·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및 제6호 내지 제8호

분야	진단기관	소재지(전화번호)	지정광역시
안전 (건설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기로400 (☎052-7030-500)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70 (☎02-860-7000)	서울청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107호(문래동3가, 예스하이테크시티)	서울청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독산동, 독산빌딩)	서울청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원시동) 901, 902, 903, 904, 905호 (☎031-431-3122)	충북청
	유양기술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신금산1길 29(옥곡면 신금리1507-52) (☎061-772-9981)	광주청
	(유)한국건설안전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219 2층 201, 202호(인연인주상복합) (☎042-825-0804)	대전청
	(유)한국안전환경과학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뚝섬로 234, 1004호(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02-6407-3452)	서울청
	(유)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95 602호 (☎031-411-8410)	충북청
	(유)산업안전진단협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39, 201호 (☎031-689-4722)	충북청
안전	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94 (☎1544-2264)	부산청
	한국산업안전관리원(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고잔동, 한양빌딩402호, 403호) (☎031-414-0723)	충북청
	한국RMS(유)	전남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451 2층(1246-7번지 2층) (☎061-691-5797)	광주청
	유한회사 한국산업안전기술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10 (비동 821호(오룡동)) (☎062-372-9893)	광주청
	(사단법인)한국건설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7층 (☎02-518-1501)	서울청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9길38 한양빌딩4층 (☎02-3453-8694)	서울청
	(유)월드안전진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E동 802호(당산동4가, 당산SKV1센터) (☎02-2671-1700)	서울청
	세이프씨아이(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7 대성스카이텍스 2층 205호(구로동) (☎02-814-8225)	서울청
	주식회사 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도 원주시 최장공단길 46 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1층 (☎02-427-3902)	서울청
	더원세이프티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19-8 에이스한솔타워 505호 (☎02-865-1515)	서울청
건설	한국종합안전(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6 4층(구의동)K244-15번지 신호빌딩 4층) (☎02-2299-1997)	서울청
	(유)안전하는사람들	경기도 의왕시 신곡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1017호 (☎031-422-2919)	충북청
	(유)한경에스앤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디지탈엠퍼라이어빌딩 D동 502호 (☎031-233-8612)	충북청
	(유)사람과안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정로 11 4층 5-1호(행신동) (☎031-938-8040)	충북청
	시스템안전주식회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53(상동, 보림씨티프라자) 802호 (☎032-654-9114)	충북청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협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7남읍) (☎02-3282-7321)	충북청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155번길 38 (☎1600-6323)	충북청
	(유)대중구조안전연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천천로399번길14 동원빌딩5층 (☎051-526-2550)	부산청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461(인사동) 1층 (☎055-745-6296)	부산청
	산업안전관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공화길31-7 (☎052-267-7437)	부산청
보건	(유)한국안전기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정촌2길 5, 802호 (☎052-223-2129)	부산청
	(유)한국건설안전연구원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17, 4층 (☎062-529-7417)	광주청
	주식회사건설표준시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행야로 46(이매동74) (☎031-722-3316)	충북청
	한국건설안전기술(유)	부산광역시 남구 뚝섬로53번길 45(대연동 1460-10) (☎051-759-3173)	부산청
	주식회사프로메카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21-7(화서동, 정자프라자) 3층 301호 (☎031-8067-6111)	충북청
	(유)신승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라길 12 201호(송진빌딩) (☎02-790-8625)	서울청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2층 210호 (☎02-866-9507)	서울청
	(유)한국산업보건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0, 2~4층 (☎031-296-1014)	충북청
	(사)한국산업위생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601호(송산빌딩) (☎02-782-3380)	충북청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직업건강안전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9 3층 301호 (☎032-668-9029-30)	충북청
주식회사 감동녹산산업보건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송정동) (☎051-362-4500)	부산청	
주식회사 타지역환경위생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9번길 6 310(중앙동, 100-6번지 제일상가 310) (☎055-261-0995)	부산청	
주식회사 세종안전보건기술원	세종 한누리대로 1952 605, 606호(반곡동, 반곡타워 605, 606호) (☎044-863-2214)	대전청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안전보건진단 사업안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에서 조사·평가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1 진단주제에 따른 분류

- ...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 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 ... 명령진단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는 진단

**명령진단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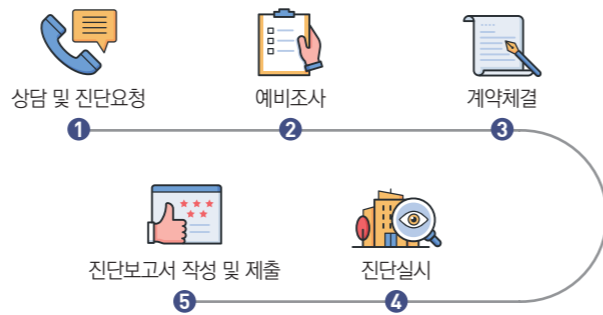
-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2 진단내용에 따른 분류

- ...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 시스템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치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 업무처리절차



- ...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 관련법규 및 진단비용

- ...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법 제4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진단비용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약 80~100만원/인·일)]



## 4 사업종류, 최소 종합진단 일수 및 진단참여 일수

### 최소 종합진단 일수(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10인 미만	7	6	5
10인 이상 20인 미만	11	7	6
20인 이상 50인 미만	15	11	7
50인 이상 80인 미만	25	20	15
80인 이상 100인 미만	30	25	20
100인 이상 200인 미만	40	30	25
200인 이상 300만 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50+\frac{\text{근로자수}-50}{20}$	$MD=40+\frac{\text{근로자수}-40}{30}$	$MD=30+\frac{\text{근로자수}-30}{40}$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수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률 30이상 업종
중위험	산재보험률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률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매년말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